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2024년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하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525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하태경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3. 11. 17.

다. 회 부 일 : 2023.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Ⅲ. 검토의견

1.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한시적 상향

현 행	개정안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59조의4제4항·제8항) ☐ 기부금 세액공제율(제4항)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한시적 세액공제율 특례(제8항) - <u>2024.1.1.~2024.12.31. 기간 중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율 40% 적용</u> * 개정안 발의 당시: <u>2021.1.1.~2022.12.31. 기간 중 기부 시 [(제4항 공제율)+5%p]의 공제율 적용</u>	☐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현행과 같음) ☐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u>2024.1.1.~2024.12.31. 기간 중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율 50% 적용</u>

* 동 개정안 발의 이후 2023년 정기회의 논의를 거쳐 2024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조정되었음.

* 하태경의원안 2023. 11. 17. 제출(의안번호 25525)

☐ 개정안은 2024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인 2023년 11월 17일 발의된 것으로,

2024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정된 현행법보다 10%p 더 높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기부의 사회적·공익적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부담으로 복지정책의 효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의 제도 연혁을 보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당시까지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공제율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고액기부분은 25%)로 전환된 이후,

2015년에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0%로 인상되었고 고액기부의 기준도 3천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하향되었으며, 2018년 세법개정 시 고액기부의 기준을 다시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낮추어, 세액공제 전환 이후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유인이 강화되어 왔음.

또한, 2021년 세법개정에서는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한 해 동안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였고, 2023년 세법개정에서는 2024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기부금 공제 개정 연혁]

과세표준		2013년 이전	2013년 개정	2015년 개정	2018년 개정	2021년, 2022년 개정	2023년 개정
공제 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 제 율	1,200만원 이하	6%	15% (3천만원 초과분 25%)	15% (2천만원 초과분 30%)	15% (1천만원 초과분 30%)	2021년, 2022년 기부금에 한하여 20% (1천만원 초과분 35%)	15% (1천만원 초과분 30%, 2024년 중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					

주: 2013년 이전에는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공제가 이루어져, 이에 공제율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한계세율과 같았음.

□ 2024년 중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상향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기부참여율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¹⁾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은 2011년 36.4%에서 2023년에는 23.7% 수준까지 하락하였는데,

최근 코로나19 피해 회복, 복지수요 증대 및 사회 양극화 등에 따라 기부문화 확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기부문화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최근 1년 이내 기부를 한 사람의 비율]

(단위: %)

연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비율	36.4	34.6	29.9	26.7	25.6	21.6	23.7

자료: 「2023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2023. 11.

둘째,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저조하여 공제를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기부에 대한 26개 국가의 세제혜택을 비교한 연구자료²⁾에 의하면,

1)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5개 부문에 대하여 전국 약 1만 9천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

2)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Tax Treatment of Donations」, Charities Aid Foundation, 2016. 7.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순위는 26개 국가³⁾ 중 고액 기부⁴⁾의 경우 24위⁵⁾, 소액기부⁶⁾의 경우 18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3년 12월 「소득세법」 일부개정으로 2024년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 조정되어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세액공제율의 추가인상과 관련하여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의 혜택이 주로 고액기부가 가능한 고소득층에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화 되는 경우 2025년 약 715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⁷⁾ 되었음.

3) 26개 국가에는 싱가포르,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호주,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트남, 폴란드, 필리핀, 아일랜드, 페루, 프랑스, 브라질, 이집트, 인도, 대한민국, 러시아가 포함됨(국가 순서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순위).

4) 각 국가별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자가 동일한 금액(10,000달러) 기부 시 받는 세제혜택의 금액가치를 비교

5) 다만, 이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2019년 법 개정(30% 세액공제 기준금액 : 2천만원→1천만원)을 감안하여 재계산하면 고액기부의 경우 20위가 될 것임.

6) 각 국가별 소득수준이 중앙소득에 해당하는 자 등이 동일한 금액(100달러) 기부 시 받는 세제혜택의 금액가치를 비교

7)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525)에 대한 비용추계서」, 국회 예산정책처

[참고: 연도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만명, 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인원	475.2	415.2	441.3	459.4	480.2	501.1	530.0	554.6	567.7	590.8
신고금액	54,758	43,724	51,155	55,066	57,262	59,864	62,592	62,664	65,615	69,108
신고금액 증가율	-	△20.15	16.99	7.65	3.98	4.54	4.55	0.12	4.71	5.32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4-2-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경우 2025년 7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음.⁸⁾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2025	연평균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안 제59조의4제8항)	△715	△715

문 의 처

02)6788-5155

8)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참고.